

암환자 의료비 지원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 / 보건의료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 위 사업 : 예방중심의 건강관리

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 치료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년 1월~12월
- 총사업비 : 350,090천원
- 사업내용 : 건강보험료 하위 50%를 대상으로 5대암(위암,대장암,간암,유방암, 자궁경부암) 조기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와 의료수급자에게 의료비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보조비율(기금 30%, 시비 35%, 구비 35%)
- 사업위치 : 강남구보건소
- 추진근거 : 암관리법 제11조 및 제13조,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(보건복지부)
- 추진계획
 -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홍보
 -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지원신청자 신청 등록 접수 : 연중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350,090	190,184	159,906	84.1%
기금보조금	105,000	57,028	47,972	84.1%
시비보조금	122,500	66,533	55,967	84.1%
자체재원	122,590	66,623	55,967	84.0%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(C)	증감률 (D=C/B)
계	350,090 기) 105,000 시) 122,500 구) 122,590	190,184 기) 57,028 시) 66,533 구) 66,623	159,906 기) 47,972 시) 55,967 구) 55,967	84.1%
201 일반운영비	90	90		0.0%
201-02 공공운영비	90	90		0.0%
307 민간이전	350,000	190,094	159,906	84.1%
307-01 민간위탁금 ○ 암환자 의료비 지원 1,332,550*120명=350,000,000원	350,000 기) 105,000 시) 122,500 구) 122,500	190,094 기) 57,028 시) 66,533 구) 66,533	159,906 기) 47,972 시) 55,967 구) 55,967	84.1%

정신보건사업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 위 사업 : 예방중심의 건강관리

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·상담·치료·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년 1월 ~ 12월
- 총사업비 : 900,008천원
- 사업내용 : 정신질환자 등록관리, 정신건강증진, 자살예방, 건강한 문화조성
- 지원형태 : 민간위탁(서울의료원)
- 지원조건 : 보조비율 정신보건센터 운영(시비 50% 구비 50%),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(기금 50%, 구비 50%), 자살예방(시비 100%)
- 사업위치 : 강남구 보건소
- 추진근거 : 정신보건법 제13조,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조례, 201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
- 추진계획
 - 정신질환자 등록관리, 정신건강증진(우울증 예방, 알코올장애 등)
 -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
 -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, 자살예방지킴이 양성, 자살고위험자(자살시도자, 자살유가족) 등록관리, 생명존중문화 조성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900,008	929,180	△ 29,172	△ 3.1%
기금보조금	25,000	25,000	0	0%
시비보조금	445,127	482,553	△ 37,426	△ 7.8%
자체재원	429,881	421,627	8,254	2%

□ 산출내역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900,008 기) 25,000 시) 445,127 구) 429,881	929,180 기) 25,000 시) 482,553 구) 421,627	△29,172 기) 0 시) △37,426 구) 8,254	△3.1%
101 인건비	71,403	81,403	△10,000	△1.2%
101-04 ○기간제근로자등 보수	71,403 시) 71,003 구) 400	81,403 시) 81,003 구) 400	△10,000 시) △10,000 구) 0	△1.2%
-급여 2,500,000원*12월*1명 = 30,000,000원				
급여 2,500,000원*9월*1명 = 22,500,000	시) 52,500	시) 60,000	시) △7,500	△12.5%
-퇴직금 2,500,000원*1명 =2,500,000원	시) 2,500	시) 5,000	시) △2,500	△50%
-연장근로수당 213,416.7*2명*12월 =5,122,000원	시) 5,122	시) 5,122	0	0.0%
-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=6,081,000원	시) 6,081	시) 6,081	0	0.0%
-출장비 200,000원*2명*12월 =4,800,000원	시) 4,800	시) 4,800	0	0.0%
-피복비:근무복 120,000*2명*1착 =240,000원				
근무화 80,000*2명*1착 =160,000원	400	400	0	0.0%
201 일반운영비	46,152 시) 11,712 구) 34,440	55,152 시) 20,712 구) 34,440	△9,000 시) △9,000 구) 0	△1.6%
201-01 사무관리비	34,192 시) 352 구) 33,840	42,192 시) 8,352 구) 33,840	△8,000 시) △8,000 구) 0	△18.9%
○임대료 2,300,000*12월 = 27,600,000원	27,600	27,600		
○기초정신보건심의(심판)위원회 운영비 = 6,240,000원	6,240	6,240	0	0.0%
○자살예방사업 - 사무용품 52,000원 - 전담인력교육비 150,000원*2명=300,000원	시) 352	시) 8,352	시) △8,000	△95.7%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201-03 행사운영비	11,960	12,960	△1,000	△7.7%
	시) 11,360	시) 12,360	시) △1,000	
	구) 600	구) 600	구) 0	
○기초정신보건심의(심판)위원회 운영비 100,000원*6회=600,000원	600	600	0	0.0%
○자살예방협의회,유관기관 간담회 200,000원*3회=600,000원	시) 600	시) 1,600	시) △1,000	△62.5%
○자살예방지킴이교육, 치유 프로그램운영 - 운영비 100,000원*46회 =4,600,000원 - 강사료 220,000원*28회 =6,160,000원	시) 10,760	시) 10,760	0	0.0%
203 업무추진비	1,387	1,387	0	0.0%
203-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1,387	1,387		
	시) 965	시) 965	0	0.0%
	구) 422	구) 422		
○자살예방 업무추진 96,500원*10회=965,000원	시) 965	시) 965		
○정신보건 업무추진 105,500원*4회=422,000원	422	422	0	0.0%
301 일반보상금	3,320	4,320	△1,000	△23.1%
301-09 행사실비보상금	3,320	4,320	△1,000	△23.1%
○치유밥상 7980.8원*32명*13회 = 3,320,000원	시)3,320	시)4,320	시) △1,000	
307 민간이전	777,746	786,918	△9,172	△1.2%
307-05 민간위탁금	777,746	786,918	△9,172	
	기) 25,000	기) 25,000	기) 0	△1.2%
	시) 358,127	시) 375,553	시) △17,426	
	구) 394,619	구) 386,365	구) 8,254	
○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	18,400	18,400	0	0.0%
○정신보건사업	702,438	711,610	0	0.0%
- 인건비	543,746	543,746		
	시) 271,873	시) 271,873	0	△1.3%
	구) 271,873	구) 271,873		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- 관리운영비	93,088 시) 46,544 구) 46,544	93,088 시) 46,544 구) 46,544	0	0.0%
- 사업비	49,096 시) 24,548 구) 24,548	49,096 시) 24,548 구) 24,548	0	0.0%
- 복지수당 105,820원×13명×12개월 = 16,507,920원	16,508 시) 8,254 구) 8,254	25,680 시) 25,680 구) 0	△9,172 시) △17,426 구) 8,254	△35.7%
○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	50,000 기) 25,000 구) 25,000	50,000 기) 25,000 구) 25,000	0	0.0%
○자살예방사업	시) 3,000	시) 3,000	0	0.0%
○열린보건소	시) 3,908	시) 3,908	0	0.0%

- 감편성 사유**
확정내시 감소

만성감염병 관리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위사업 : 예방중심의 건강관리

만성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 관리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1. 1 ~ 12. 31
- 총사업비 : 136,208천원
- 사업규모 : HIV 감염인관리, 중·고등학생 결핵검진 15,000명
- 사업내용 :
 - 결핵환자 치료 관리 및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취약계층 검진 실시
 - HIV 감염인 상담 및 진료비 지원등
 - 결핵 및 에이즈·성병 예방교육 실시
- 지원형태 : 보조율에 의한 재원분담 및 자체재원
- 지원조건 : 지자체보조 - 기금 28.3%, 시비 30.0%, 구비 41.7%
- 추진근거 : 결핵예방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136,208	155,316	△19,108	△12.3
기금보조금	38,516	48,070	△9,554	△19.8
시비보조금	40,901	50,455	△9,554	△18.9
자체재원	56,791	56,791	0	0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136,208 기)38,516 시)40,901 구)56,791	155,316 기)48,070 시)50,455 구)56,791	△19,108 △기)9,554 △시)9,554 구) 0	△12.3 △기)19.8% △시)18.9% 구) 0
201 일반운영비	7,116	7,116	0	0.0%
201-01 사무관리비				
○ 결핵관리				
- 결핵약봉투 600원×1,000부=600,000원				
- 홍보물제작 500원×2,000부=1,000,000원				
- 보건세계구독료 10,000원×20부=200,000원	5,635	5,635		
- 공기살균기렌프교체 150,000원×3대=450,000원	시)2,385	시)2,385	0	0.0%
○ 성병 및 에이즈관리	구)3,250	구)3,250		
- 예방 홍보물 제작				
500원×2,000부=1,000,000원				
- HIV 신속내성검사 홍보비				
1.193원×200부 2,385,000원(시 2,385)				
201-02 공공운영비				
○ 결핵관리 우편요금				
- 등기우편 1,930원×20통=39,000원	281	281	0	0.0%
- 일반우편 300원×613통=184,000원				
○ 성병 및 에이즈관리				
- 등기우편 1,930원×30통=58,000원				
201-03 행사운영비				
○ 만성감염병 예방교육 강사료				
- 100,000원×10회=1,000,000원	1,200	1,000	0	0.0%
○ 만성감염병 예방홍보 캠페인 홍보물				
100,000원×2회=200,000원				
203 업무추진비	700	700	0	0.0%
203-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			
○ 감염인 등록관리업무추진비	700	700		
12,068원×58회=700,000원	기)350	기)350	0	0.0%
(기 350 시 350)	시)350	시)350		
301 일반보상금	260	260	0	0.0%
301-09 행사실비보상금				
○ 만성감염병 예방홍보	260	260	0	0.0%
- 86,600원×3회=260,000원				
307 민간이전	123,882	142,990	△19,108	△13.4%
307-01 의료및구료비	123,882	142,990	△19,108	△13.4%
○ 결핵관리	기)38,166	기)47,720	△기)9,554	△기)20.0%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등학생 X-선 검진비 2,900원×8,500명=24,650,000원 - 중학생 X-선 검진비 2,900원×6,500명=18,850,000원 - 영양제·소화제 : 6,700원×500통= 3,350,000원 ○ 에이즈 관리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이즈환자진료비 지원 487,080원 × 150명=73,062,000원 (기36,531 시 36,531) ○ 에이즈 관리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이즈진단시약구입 467,142원 × 7키트 = 3,270,000원 (기 1,635 시 1,635) ○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진용소모품구매 1,000원×500개 = 500,000원 - 성매개감염병치료제 400원×500정 = 200,000원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)38,166 구)47,550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)47,720 구)47,550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△시)9,554 구) 0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△시)20.0% 구) 0%</p>
401 시설비및부대비	2,000	0	0	0.0%
401-01 시설비	2,000	0	0	0.0%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염병관리실 접수대 칸막이 2,000,000원×1개= 2,000,000원 				
405 자산취득비	2,250	2,250	0	0.0%
405-01 자산 및 물품취득비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염병관리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기살균기 구매 2,000,000원×1대 = 2,000,000원 - 객담보관 냉장고 구매 250,000원×1대 = 250,000원 	2,250	2,250	0	0.0%

□ **감편성 사유 : 확정내시 감소**

생애전환기 건강진단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 위 사업 : 예방중심의 건강관리

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,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하여 주요 만성질환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, 조기치료 및 관리하여 건강증진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년 1월~12월
- 총사업비 : 10,488천원
- 사업내용 : 생애전환기 대상 예탁금 지급에 따른 현황 관리 및 홍보
- 지원형태
 - 직접수행(보건소) : 사업계획 수립, 사업비 확보 및 홍보
 - 공기관 대행(국민건강보험공단) : 검진비용 지급
 - 민간위탁(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) : 검진
- 지원조건 : 보조비율(기금 50% 시비 25% 구비 25%)에 의한 재원부담
- 추진근거 : 의료급여법 제14조,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
- 추진계획
 - 사업계획 수립, 예탁금 예탁, 수검독려 및 홍보
 - 사후관리 및 예탁금(건강진단비) 정산
 - 비취학청소년 대상자 선정, 비용지급 및 사후관리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10,488	8,428	2,060	24.4%
기금	5,214	4,184	1,030	24.6%
시비보조금	2,607	2,092	515	24.6%
자체재원	2,667	2,152	515	23.9%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10,488 기) 5,214 시) 2,607 구) 2,667	8,428 기) 4,184 시) 2,092 구) 2,152	2,060 기) 1,030 시) 515 구) 515	24.4%
201 일반운영비	500	500	0	0.0%
201-01 사무관리비 ○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- 사업홍보비 2,200원×200명=440,000원	440 기) 220 시) 110 구) 110	440 기) 220 시) 110 구) 110	0	0.0%
201-02 공공운영비 ○공공요금 일반우편 300원×200명=60,000원	60	60	0	0.0%
307 민간이전	388	388	0	0.0%
307-01 의료 및 구료비 ○만15~18세 비취학청소년 검진 48,500원×8명=388,000원	388 기) 194 시) 97 구) 97	388 기) 194 시) 97 구) 97	0	0.0%
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	9,600	7,540	2,060	27.3%
403-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○만40세 및 6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96,000원×100명=9,600,000원	9,600 기) 4,800 시) 2,400 구) 2,400	7,540 기) 3,770 시) 1,885 구) 1,885	2,060 기) 1,030 시) 515 구) 515	27.3%

SARS등 신종감염병대책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위사업 : 예방중심의 건강관리

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(의사)환자 발생경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유행을 조기파악하고 유행양상을 예측하여 국민·의료기관에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년 1월 ~ 12월
- 총사업비 : 600천원
- 사업규모 :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2개소
- 사업내용 : 인플루엔자 임상감시
- 지원조건 : 기금 50%, 시비 50%
- 추진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추진계획 : 제3군 인플루엔자 발생감시 및 예방관리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600	900	△ 300	△ 33.3%
국고보조금	300	450	△ 150	△ 33.3%
시비보조금	300	450	△ 150	△ 33.3%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600	900	△ 300	
	기) 300	기) 450	△ 기) 150	△ 33.3%
	시) 300	시) 450	△ 시) 150	
307 민간이전	600	900	△ 300	△ 33.3%
307-02 민간경상사업보조	600	900	△ 300	
○ 인플루엔자 임상감시 운영비	기) 300	기) 450	△ 기) 150	△ 33.3%
	시) 300	시) 450	△ 시) 150	

□ 감편성 사유 : 확정내시 감소

영유아 건강검진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 위 사업 : 예방중심의 건강관리

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년 1월~12월
- 총사업비 : 12,844천원
- 사업내용 :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(정밀검사비 지원) 및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지원조건 : 보조율(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)에 의한 재원분담 및 자체재원
- 추진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,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(건강검진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
- 추진계획 : -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
-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(의료수급권자 검진비 예탁)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12,844	17,972	△ 5,128	△ 28.5%
기금보조금	5,422	7,986	△ 2,564	△ 32.1%
시비보조금	2,711	3,993	△ 1,282	△ 32.1%
자체재원	4,711	5,993	△ 1,282	△ 21.4%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12,844 기) 5,422 시) 2,711 구) 4,711	17,972 기) 7,986 시) 3,993 구) 5,993	△5,128 △기) 2,564 △시) 1,282 △구) 1,282	△28.5%
201 일반운영비	2,000 국) 1,000 시) 500 구) 500	2,000 국) 1,000 시) 500 구) 500	0	0%
01 사무관리비 ○ 저소득층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홍보비	2,000 국) 1,000 시) 500 구) 500	2,000 국) 1,000 시) 500 구) 500	0	0%
307 민간이전	3,372 국) 686 시) 343 구) 2,343	9,600 기) 3,800 시) 1,900 구) 3,900	△6,228 △국) 3,114 △시) 1,557 △구) 1,557	△81.9%
307-01 의료및구료비 ○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장애 의심아동 확진비	1,372 국) 686 시) 343 구) 343	7,600 기) 3,800 시) 1,900 구) 1,900	△6,228 △국) 3,114 △시) 1,557 △구) 1,557	△81.9%
○ 저소득층영유아건강보조제 등	구) 2,000	구) 2,000	0	0%
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	7,472 기) 3,736 시) 1,868 구) 1,868	6,372 기) 3,186 시) 1,593 시) 1,593	1,100 기) 550 시) 275 구) 275	17.2%
403-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○ 저소득층 영유아일반건강검진비 (국민건강보험공단)	7,000 기) 3,500 시) 1,750 구) 1,750	5,760 기) 2,880 시) 1,440 구) 1,440	1,240 기) 620 시) 310 구) 310	21.5%
○ 저소득층 영유아구강검진비 (국민건강보험공단)	472 기) 236 시) 118 구) 118	612 기) 306 시) 153 구) 153	△140 △기) 70 △시) 35 △구) 35	△22.8%

□ 감편성 사유

확정내시 감소

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위사업 :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

소득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 체계를 구축 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2.1 ~ 2016.1.31
- 총사업비 : 332,360천원
- 사업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- 지원형태 : 민간위탁(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)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추진근거 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- 추진경위 : 확정내시 증가
- 추진계획 : 서비스 대상자 신청 바우처 지급, 서비스 실시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332,360	288,000	44,360	15.4%
국고보조금	166,180	144,000	22,180	15.4%
시비보조금	83,090	72,000	11,090	15.4%
자체재원	83,090	72,000	11,090	15.4%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332,360 국) 166,180 시) 83,090 구) 83,090	288,000 국) 144,000 시) 72,000 구) 72,000	44,360 국)22,180 시)11,090 구)11,090	15.4%
307 민간이전	332,360	288,000	44,360	15.4%
307-05 민간위탁금	332,360	288,000	44,360	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44,360,000원 (국22,180천 원,시11,090천 원,구11,090천 원)	국) 166,180 시) 83,090 구) 83,090	국) 144,000 시) 72,000 구) 72,000	국)22,180 시)11,090 구)11,090	15.4%

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 위 사업 : 예방중심의 건강관리

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·심리적 안녕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년 1월~12월
- 총사업비 : 660,000천원
- 사업내용
 - 대 상 : 지정 된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자로서 저소득자
 - 지원내용 :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, 간병비, 보장구 구입비,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등
- 지원형태 : 공기관 대행 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지원조건 : 보조비율(기금 30% 시비 35% 구비 35%)에 의한 재원부담
- 추진근거 : 희귀·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운영지침
- 추진계획
 -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지원신청자 신청 등록 접수 : 연중
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비 예탁 (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)
 - 지원 대상자들은 2년마다 정기 소득·재산 조사 실시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660,000	648,620	11,380	1.8%
기금	198,000	194,586	3,414	1.8%
시비보조금	231,000	227,017	3,983	1.8%
자체재원	231,000	227,017	3,983	1.8%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660,000 기) 198,000 시) 231,000 구) 231,000	648,620 기) 194,586 시) 227,017 구) 227,017	11,380 기) 3,414 시) 3,983 구) 3,983	1.8%
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	660,000	648,620	11,380	1.8%
403-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○75,000원*8,800건=660,000,000원	660,000 기) 198,000 시) 231,000 구) 231,000	648,620 기) 194,586 시) 227,017 구) 227,017	11,380 기) 3,414 시) 3,983 구) 3,983	1.8%

치매 관리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 / 보건의료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위사업 :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

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, 등록관리, 치료비지원, 지역자원연계 등 치매 예방 및 등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생활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년 1월~12월
- 총사업비 : 793,013천원
- 사업내용
 -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, 조기검진, 등록관리, 치매치료비지원
 - 뇌건강클리닉(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) 운영 등
- 지원형태 : 민간위탁(삼성서울병원)
- 지원조건
 - 치매조기검진 및 인건비 등 보조비율(시비 50%, 구비 50%)
 - 치매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보조비율(국비 50%, 시비 15%, 구비 35%)
 - 치매치료관리 보조비율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
- 사업위치 : 강남구 선릉로 108길 27(삼성동)
- 추진근거 : 치매관리법 제17조, 제20조
- 추진계획
 -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사업
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예탁(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)
 - 치매치료비 및 원인확진검사비 지원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793,013	747,789	45,224	6.0%
국고보조금	19,500	19,500		0.0%
시비보조금	315,668	291,076	24,592	8.4%
자체재원	457,845	437,213	20,632	4.7%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(C)	증감률 (D=C/B)
계	793,013 국) 19,500 시) 315,668 구) 457,845	747,789 국) 19,500 시) 291,076 구) 437,213	45,224 국) 0 시) 24,592 구) 20,632	6.0%
203 업무추진비	500	500		0.0%
203-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구) 500	구) 500		0.0%
307 민간이전	732,513	687,289	45,224	6.7%
307-05 민간위탁금				
○ 종사자 인건비 3,500,439.4원*11명*12월=462,058,000원				
○ 프로그램운영 및 사업운영비 19,417,916.6원*12월=233,015,000원	732,513	687,289	45,224	6.6%
○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80,000원*50명=4,000,000원 110,000원*100명=11,000,000원	국) 7,500 시) 301,668 구) 423,345	국) 7,500 시) 277,076 구) 402,713	국) 0 시) 24,592 구) 20,632	0.0% 8.9% 5.1%
○ 복지수당 187,000원*10명*12월=22,440,000원				
401 시설비 및 부대비	20,000	20,000		0.0%
401-01 시설비	구) 20,000	구) 20,000		0.0%
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	40,000	40,000		0.0%
403-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	40,000 국) 12,000 시) 14,000 구) 14,000	40,000 국) 12,000 시) 14,000 구) 14,000		0.0%

영양플러스사업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 위 사업 :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

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보충식품을 일정 기간 지원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1월 ~ 12월
- 총사업비 : 374,502천원
- 사업내용
 - 대상 :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 - ① 강남구 거주 ② 만 5세 미만의 영유아, 임신부, 출산수유부
 - ③ 빈혈, 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
 - ④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%미만의 소득수준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)

가구원수	최저생계비 200(%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(직장+지역)
1인	1,235,000	40,385	17,062	40,810
2인	2,102,000	68,277	55,434	69,211
3인	2,719,000	88,366	87,560	89,365
4인	3,337,000	108,764	115,882	109,995
5인	3,954,000	129,219	142,729	130,736

- 단체 영양 교육, 개인별 영양상담, 가정방문 교육 실시
- 우유, 쌀, 계란, 감자, 당근 등 보충식품 지원
- 지원조건 : 국비보조형(국비:시비:구비=50:15:35), 시비보조형(시비:구비 = 35:65)
- 추진근거 :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(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)
- 추진계획
 -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2015년 강남구영양플러스사업 계획 수립(2015.1월)
 - 사업수행 절차
 - : 대상자 모집 안내 → 구비서류 확인 및 영양위험요인 등 평가
 - 대상자선정 및 등록 → 영양관리(교육 및 상담, 보충식품제공, 가정방문)
 - 정기적 영양 평가 및 퇴록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374,502	308,813	65,689	21.3%
국고보조금	51,975	51,975	0	0.0%
시비보조금	107,554	84,563	22,991	27.2%
자체재원	214,973	172,275	42,698	24.8%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374,502 국) 51,975 시) 107,554 구) 214,973	308,813 국) 51,975 시) 84,563 구) 172,275	65,689 국) 0 시) 22,991 구) 42,698	21.3%
101 인건비	71,895	53,813	18,082	33.6%
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○ 기간제근로자 월급여 1,600,000원×10월=16,000,000원 (시 5,600 구 10,400) ○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- 국민연금보험 16,000,000원×4.5%=720,000원 - 건강보험 16,000,000원×3.035%=486,000원 - 장기요양보험 486,000원×3.275%=16,000원 - 고용보험 16,000,000원×1.5%=240,000원 - 산재보험 16,000,000원×1.0%=160,000원 (시 568 구 1,054) ○ 피복비 - 근무복 120,000원×1착=120,000원 - 근무화 80,000원×1착=80,000원 (시 70 구 130) ○ 복지수당 20,000원×10월=200,000원 (시 70 구 130) ○ 명절상여수당 30,000원×2회=60,000원 (시 21 구 39)	71,895 국) 10,850 시) 18,909 구) 42,136	53,813 국) 10,850 시) 12,580 구) 30,383	18,082 국) 0 시) 6,329 구) 11,753	33.6%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201 일반운영비	19,682	9,200	10,482	113.9%
201-01 사무관리비				
○ 빈혈검사소모품 1,000원×50명×4회=200,000원(시 70 구 130)	15,600	6,500	9,100	140.0%
○ 리플렛 450원×2,000부=900,000원 (시 315 구 585)	국) 625 시) 5,210 구) 9,765	국) 625 시) 2,025 구) 3,850	국) 0 시) 3,185 구) 5,915	
○ 이유식책자 3,000원×1,000부=3,000,000원 (시 1,050 구 1,950)				
○ 홍보물 5,000원×1,000개=5,000,000원 (시 1,750 구 3,250)				
201-02 공공운영비	600 시) 163 구) 437	600 시) 163 구) 437	0 시) 0 구) 0	0.0%
201-03 행사운영비				
○ 교육운영비 6,640원×50명=332,000원 (시 116 구 216)	3,482 시) 1,218 구) 2,264	2,100 시) 735 구) 1,365	1,382 시) 483 구) 899	65.8%
○ 영양골든벨 퀴즈대회 3,000원×350명=1,050,000원 (시 367 구 683)				
203 업무추진비	200	200	0	0.0%
203-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200	200	0	0.0%
301 일반보상금	600	600	0	0.0%
301-09 행사실비보상금	600 시) 210 구) 390	600 시) 210 구) 390	0	0.0%
307 민간이전	280,125	243,000	37,125	15.3%
307-01 의료및구료비				
○ 보충식품비 67,500원×50명×11월=37,125,000원 (시 12,994 구 24,131)	280,125 국) 40,500 시) 81,844 구) 157,781	243,000 국) 40,500 시) 68,850 구) 133,650	37,125 국) 0 시) 12,994 구) 24,131	15.3%
405 자산취득비	2,000	2,000	0	0.0%
405-01 자산및물품취득비	2,000	2,000	0	0.0%

산모 건강관리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 위 사업 :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

임산부 건강관리,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,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등을 통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년 1월~12월
- 총사업비 : 1,202,498천원
- 사업내용
 -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: 예비부부 건강검진,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 - 임산부 건강관리 : 임산부 등록관리, 출산준비교실 운영,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
 -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(신규)
 - 대 상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이하(3인가족 : 6,635천원)
 - 세부내용 : 34주미만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한 진료를 받은 임산부
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료를 받은 임산부
분만과정에서 과다출혈로 5팩이상 수혈을 받은 임산부
 - 출산부 건강관리 : 모유수유클리닉 운영, 산후조리원 관리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관리
- 지원형태 : 의료비지원 및 보건교육
- 지원조건 : 기금 30%, 시비 35%, 구비 35% (청소년산모의료비 : 50%, 25%, 25%)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, 제10조, 제11조, 제15조
- 추진계획 : 지침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1,202,498	1,132,498	70,000	6.2%
기금보조금	289,525	268,525	21,000	7.8%
시비보조금	338,361	313,861	24,500	7.8%
자체재원	574,612	550,112	24,500	4.5%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1,202,498 기) 289,525 시) 338,361 구) 574,612	1,132,498 기) 268,525 시) 313,861 구) 550,112	70,000 기) 21,000 시) 24,500 구) 24,500	6.2%
304 민간이전	1,061,565 기) 274,851 시) 319,456 구) 467,258	991,565 기) 253,851 시) 294,956 구) 442,758	70,000 기) 21,000 시) 24,500 구) 24,500	7.1%
307-01 의료및구료비				
○ 임신부건강관리				
- 기형아검사 70,000원×500건 = 35,000,000원				
- 풍진검사 40,000원×1,400명= 56,000,000원				
- 당뇨검사시약등 2,000원×600개=1,200,000원				
- 여성결혼이민자, 허약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7,000원×2명×400명=5,600,000원				
-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철분제등 지원 5,000원×4,000통=20,000,000원				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	1,061,565	991,565	70,000	
- 체외수정시술비 지원				
· 1~4차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2,671,500원×250명=667,875,000원 (기 200,364 시 233,755 구 233,756)	기) 274,851 시) 319,456 구) 467,258	기) 253,851 시) 294,956 구) 442,758	기) 21,000 시) 24,500 구) 24,500	7.1%
· 5차 체외수정시술비 확대 지원 1,000,000원×30건=30,000,000원				
-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717,875원×240명=172,290,000원 (기 51,687 시 60,301 구 60,302)				
○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1,200,000원×3명=3,600,000원 (기 1,800 시 900 구 900)				
○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,000,000원×70명=70,000,000원 (기 21,000 시 24,500 구 24,500)				

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

회계연도 : 2015년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보건과	기 능 :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
정책사업 : 건강증진사업	단 위 사업 :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

장애 및 영유아 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상아동의 조기발견 및 치료,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1월~12월
- 총사업비 : 519,850천원
- 사업내용 :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및 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(의료비 지원) 및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(인구보건 복지협회, 서울대병원)
- 지원조건 : 보조율(기금 30%, 시비 35%, 구비 35%)에 의한 재원분담 및 자체재원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10조(임산부, 영유아, 미숙아등의 건강관리)
- 추진계획 :
 -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
 - 신생아 청각선별검사
 -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
 - 미숙아 건강증진 방문 서비스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519,210	463,202	56,008	12%
기금보조금	152,730	135,926	16,804	12.3%
시비보조금	178,180	158,578	19,602	12.3%
자체재원	188,300	168,698	19,602	11.6%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예산액 (A=B+C)	기정액 (B)	추경요구액 (증감) (C)	증감률 (D=C/B)
계	519,210 기) 152,730 시) 178,180 구) 188,300	463,202 기) 135,926 시) 158,578 구) 168,698	56,008 기) 16,804 시) 19,602 구) 19,602	12%
201 일반운영비	구) 4,300	구) 4,300	0	0%
201-01 사무관리비 ○ 아동건강관리 홍보물 제작	구) 900	구) 900	0	
201-02 공공운영비 ○ 일반우편료	구) 900	구) 900	0	0%
201-03 행사운영비 ○ 미숙아건강증진 부모자조모임 운영	구) 2500	구) 2500	0	
301 일반보상금	구) 420	구) 420	0	0%
301-09 행사실비보상금 ○ 미숙아 부모 자조모임 운영 등 다과	구) 420	구) 420	0	0%
307 민간이전	513,870 기) 152,544 시) 177,963 구) 183,363	457,862 기) 135,740 시) 158,361 구) 163,761	56,008 기) 16,804 시) 19,602 구) 19,602	12.3%
307-01 의료 및 구료비 ○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	322,742 기) 96,823 시) 112,960 구) 112,959	266,734 기) 80,019 시) 93,358 구) 93,357	56,008 기) 16,804 시) 19,602 구) 19,602	12.3%
○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	178,949 기) 53,686 시) 62,631 구) 62,632	178,949 기) 53,686 시) 62,631 구) 62,632	0	0%
○ 저소득 신생아 청각선별검사	6,779 기) 2,035 시) 2,372 구) 2,372	6,779 기) 2,035 시) 2,372 구) 2,372	0	0%
○ 일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	구) 5,400	구) 5,400	0	0%

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	620 기) 186 시) 217 구) 217	620 기) 186 시) 217 구) 217	0	0%
403-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○ 저소득신생아청각선별검사 홍보위탁	620 기) 186 시) 217 구) 217	620 기) 186 시) 217 구) 217	0	0%